

부속서 2다  
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

대한민국의 양허표

대상 품목,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

1. 이 부속서는 제2.14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,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및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해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.

2.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다음 날부터는 적용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.

가.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닭고기에 대해서는,

적용품목: HSK 0207.11.1000, 0207.11.9000, 0207.13.1010, 0207.13.1020,  
0207.13.103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(미터톤)	4,361	4,448	4,537	4,628	4,720	4,815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8.0	18.0	18.0	18.0	18.0	13.5

이행년도	7	8	9	10	11
발동수준(미터톤)	4,911	5,009	5,110	5,212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3.5	13.5	13.5	13.5	0

나.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오리고기에 대해서는,

적용품목: HSK 0207.33.0000, 0207.36.1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(미터톤)	810	826	843	860	877	894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8.0	18.0	18.0	18.0	18.0	13.5

이행년도	7	8	9	10	11
발동수준(미터톤)	912	930	949	968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3.5	13.5	13.5	13.5	0

다.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무당연유에 대해서는,  
적용품목: HSK 0402.91.1000, 0402.91.9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(미터톤)	65	66	68	69	70	72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89.0	89.0	89.0	89.0	89.0	66.8

이행년도	7	8	9	10	11
발동수준(미터톤)	73	75	76	78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66.8	66.8	66.8	66.8	0

라.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체다치즈에 대해서는,  
적용품목: HSK 0406.90.1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(미터톤)	730	745	759	775	790	806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36.0	36.0	36.0	36.0	36.0	27.0

이행년도	7	8	9	10	11
발동수준(미터톤)	822	839	855	872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7.0	27.0	27.0	27.0	0

마.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천연풀에 대해서는,

적용품목: HSK 0409.00.0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(미터톤)	266	271	277	282	288	294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43.0	243.0	243.0	243.0	243.0	243.0
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(미터톤)	300	306	312	318	324	331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43.0	243.0	243.0	243.0	182.3	182.3

이행년도	13	14	15	16	17
발동수준(미터톤)	337	344	351	358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82.3	182.3	182.3	182.3	0

마.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콩류에 대해,

적용품목: HSK 0713.31.9000, 0713.32.9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(미터톤)						
0713.31.9000	64	65	67	68	69	71
0713.32.9000	296	302	308	314	320	327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					
0713.31.9000	607.5	607.5	607.5	607.5	607.5	455.6
0713.32.9000	420.8	420.8	420.8	420.8	420.8	315.6

이행년도	7	8	9	10	11
발동수준(미터톤)					
0713.31.9000	72	74	75	76	해당없음
0713.32.9000	333	340	347	354	해당없음
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				
0713.31.9000	455.6	455.6	455.6	455.6	0
0713.32.9000	315.6	315.6	315.6	315.6	0

사. 아래에 포함된 바와 같은 랜더린에 대해서는,  
적용품목: HSK 0805.20.9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(미터톤)	7,040	7,181	7,324	7,471	7,620	7,773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44.0	144.0	144.0	144.0	144.0	144.0
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(미터톤)	7,928	8,087	8,248	8,413	8,582	8,753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44.0	144.0	144.0	144.0	108.0	108.0

이행년도	13	14	15	16	17
발동수준(미터톤)	8,928	9,107	9,289	9,475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08.0	108.0	108.0	108.0	0

## 부속서 2라

###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<sup>1)</sup>

HS	품목명
0401100000	- 지방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 이하인 것
0401200000	- 지방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 초과 6퍼센트 이하인 것
0402101000	- - 실함량이 2.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
0402109000	- - 기타
0402211100	- - - 실함량이 2.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
0402211900	- - - 기타
0402219100	- - - 실함량이 2.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
0402219900	- - - 기타
0402291100	- - - 실함량이 2.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
0402291900	- - - 기타
0402299100	- - - 실함량이 2.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
0402299900	- - - 기타
0402991000	- - - 가당연유
0404109000	- - 기타
0405100000	- 버터
0405902000	- - 무수 데어리 유(버터오일)
0405909000	- - 기타
0406300000	- 가공치즈(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한다)
0406904000	- -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 미만인 것
0406905000	- -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 이상 56퍼센트 미만인 것
0406906000	- -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 함유량이 전중량의 56퍼센트 이상 69퍼센트 미만인 것
0406909000	- - 기타
1005901100	- - - 노란색의 것
1005901200	- - - 흰색의 것
1005909000	- - 기타
1006109000	- - 기타
1006200000	- 혼미

1) 이 부속서에 기재된 상품에 대해서는, 종가세는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양허표에 따라 철폐된다.

HS	품목명
1006300000	- 반도정미 또는 완전도정미(백미 또는 광택 연부를 불문한다)
1006400000	- 쇄미
1007009000	- 기타
1103130000	- - 옥수수의 것
1108120000	- - 옥수수 전분
1108130000	- - 감자 전분
1701119000	- - - 기타
1701120000	- - 사탕무당
1701999000	- - - 기타
1702302000	- - 포도당 시럽
1702600000	- 기타 과당과 과당시럽(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퍼센트 초과인 것으로, 전화당은 제외한다)
1702902000	- - 캐러멜
1702903000	- - 향미나 촉색제를 첨가한 설탕
1702904000	- - 기타 시럽
1901902000	- - 밀크캐러멜 또는 밀크스위트(만자 블랑코)
1901909000	- - 기타
2106907900	- - - 기타
2106909000	- - 기타
2309909000	- - 기타
3505100000	-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